



제319회 임시회  
2013. 4. 16.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○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3년 4월 5일
- 회부일자 : 2013년 4월 9일

## 3. 제안이유

-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·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감면(150만원 한도) 만료기간을 연장하기 위함

## 4. 주요내용

- 공채 매입 면제 대상(안 제8조의 별표 2)
  -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기간 연장('12. 12. 31. → '14. 12. 31.)
  -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 150만원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
- 시행 전('13. 1. 1. 이후) 등록된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적용(부칙 안 제2조)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조례 개정의 필요성

-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, 공급하고자 설치된 것으로 주요 수입원은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 등임
- 동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면제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#### <2012년도 기금수입현황>

(단위 : 천원)

계	공채판매액	용자금 이자수입	용자금 원금회수	전년도 이월액	기타수입
231,106,239 (100%)	112,742,300 (49%)	21,064,304 (9%)	66,835,825 (29%)	29,446,786 (12%)	1,017,024 (1%)

#### <2012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출현황>

(단위 : 천원)

계	자동차 등록		각종 계약체결	기타 허가 및 신고
	신규등록	이전등록		
112,742,300 (100%)	60,025,060 (53%)	9,002,800 (8%)	32,437,750 (29%)	11,276,690 (10%)

### 나.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

- 조례안 별표 2 ‘공채의 매입면제대상’ 제2호 타목의 현행조문을 개정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등록 시 150만원 범위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채매입을 면제토록 하였고, 부칙 제2조에 2013년 1월 1일부터 조례 시행 전까지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토록 하였음

- 소급 조항에 의해 금년 1월 1일부터 조례 시행 전까지 등록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환급액은 3월말 기준으로 총 248대 29,690천원이며, 향후 면제기간 연장에 따라 예상되는 연간 매출 감소액은 1,035,000천원으로 자동차 등록에 따른 총 채권매출액 대비 1.5%에 불과하며, 기금의 실질 수입감소액도 연간 10,350천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사료됨
- 또한,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통해 국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이미 모든 타 시도에서 조례를 개정할 것을 감안할 때 동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### 환급 예상금액

- ▶ 기 간 : 2013. 1. 1 ~ 3. 31
- ▶ 등록대수 : 248대(1월 95대, 2월 63대, 3월 90대)
- ▶ 환급예상액 : 29,690천원
- <산출기초>
  - 현대 아반떼 및 기아 포르테 기준
  - 채권 즉시매도 235대(95%), 채권보유 13대(5%)
    - 즉시매도 : 235대 × 50,000원(1,380천원×4.0%) = 11,750,000원  
 ※ 채권 즉시 매도시, 채권시장 공채부담률만 납부  
 (2013년 1월 공채 부담률 4.0%)
    - 채권보유 : 13대 × 1,380,000원 = 17,940,000원  
 ※ 채권 보유시, 채권금액 전액 납부

### 연간 예상손실액

- ▶ 연간 손실예상액 : 10,350천원(매출 감소액 1,035,000천원)
- <산출기초>
  - 현대 아반떼 및 기아 포르테 기준(1500cc이하 기준)
  - 등록차량 : 연간 750대 예상
    - 채권매출액 : 1,035,000천원(750대 × 1,380천원)
    - 연간 순손실액 : 10,350천원  
 ※ 1,035,000천원 × 1%[융자이율(3.5%) - 상환이율(2.5%)]

## 하이브리드차량 지역개발채권 감면 조례개정 타시도 추진현황

구 분	채권종류	감면추진	감면 추진상황	비고
서울특별시	도시철도채권	○	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감면	완료
부산광역시	도시철도채권	○	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감면	완료
대구광역시	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	○	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감면 지역개발기금은 2011년에 조례 개정하 여 기한 명시 안함	완료
인천광역시	지역개발채권	○	1월 의원발의로 조례개정	완료
광주광역시	지역개발채권	○	1월 의원발의로 조례개정	완료
대전광역시	지역개발채권	○	1월 의원발의로 조례개정	완료
울산광역시	지역개발채권	○	3월 임시회 상정, 4월 9일 조례공포	완료
세종시	지역개발채권	○	조례에 기한 명시 안함, 2013년에도 감면 계속	완료
경기도	지역개발채권	○	1월 의원발의로 조례개정	완료
강원도	지역개발채권	○	3월 임시회 상정, 4월 조례공포 예정	완료
충청남도	지역개발채권	○	1월 의원발의로 조례개정	완료
전라북도	지역개발채권	○	2012년 취득세 감면조항 준용으로 조례개정, 감면 계속	완료
전라남도	지역개발채권	○	1월 의원발의로 조례개정	완료
경상북도	지역개발채권	○	1월 의원발의로 조례개정	완료
경상남도	지역개발채권	○	3월 임시회 상정, 3월28일 조례공포	완료
제주도	지역개발채권	○	2월 임시회 상정, 3월 조례공포	완료